

제 - 호

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

상호 또는 성명 :

대표자 :

등록일 :

최종수정일 :

소재지 :

사업자등록번호 :

상기와 같이 방위사업청에 군수품무역대리업으로 적법하게 등록되었음을
증명합니다. 위 등록증은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.

년 월 일

방 위 사 업 청 장

직인

※ 유의사항

1.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등록 하여야 합니다.
2.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4. 위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.
5. 위 등록증의 유효 여부는 방위사업청(고객지원센터 전화 02-2079-6156)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